

춘천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0가단207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장현우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열

변 론 종 결 2022. 4. 12.

판 결 선 고 2022. 5. 3.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9. 3. 2.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23. D에게 원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권 등을 8,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20,6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4. 22.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52386호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30. ‘D은 원고 A에게 10,300,000원, 원고 B에게 10,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 2019. 3. 2. D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용 중이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무자력 여부

갑 6(= 을 1), 을 2,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던 6필지의 토지와 위 6필지에 설정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을 마친 채무 합계액은 103,470,170원인 사실, 위 6필지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매각대금의 합계액은 99,487,700원으로 위 채무 합계액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 D은 그 외에도 G에게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무 38,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D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36,640,000원과 계불입금 채무 50,750,000원 합계 87,39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D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적극재산	매각금액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채무
경북 봉화군 H 토지 및 I 토지	30,510,000원	1. J조합 26,000,000원 2. K 35,000,000원 3. L 30,000,000원
M 토지	27,000,000원	1. J조합 26,000,000원 2. K 35,000,000원 3. L 30,000,000원
N 토지	11,200,000원	1. J조합 26,000,000원 2. K 35,000,000원 3. L 30,000,000원
O 토지 및 P 토지	30,777,700원	1. J조합 26,000,000원 2. K 35,000,000원 3. L 30,000,000원 4. 근로복지공단 12,470,170원
	99,487,700	103,470,170원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D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D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36,640,000원과 계금 채권 50,750,000원 합계 87,390,000원인 채권의 일부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36,640,000원과 계금 채권 50,750,000원 합계 87,390,000원인 채권의 일부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채무자인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

별지